

농기계종합보험 보상지침(안)

농 업 보 험 부

정책보험지급팀



목 차

1. 배 경	3
2. 지침(안) 주요내용	3
① 간접손해 산출 · 지급의 적정성	4
② 자손 · 대인 지급기준의 명확화	9
③ 장기미결 관리 강화	10
④ 농기계표준정비수가 및 차량가액 적용	11
3. 향후 계획	12

1 배 경

- '19. 5월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실태 점검” 지적사항 이행
-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으로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 농기계종합보험 보상지침 일원화로 업무혼선과 애로 사항 해결

2 지침(안)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간접손해	간접손해 산출 지급의 적정성
자손·대인보상	자손·대인 지급기준의 명확화
장기미결 관리	장기 미결관리 강화
정비수가·차량가액	농기계 표준정비수가 및 차량가액 적용

① 간접손해 산출·지급의 적정성

가. 대차료

비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비 또는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0% 현금보상

- (렌트비) 렌트비 인정기준은 “붙임1”의 대차료 표준 일람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인정
 - 화물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아반떼 기준 요금을 인정
 - 인정기준 : 표준요금표의 × 70%까지 한다.
- (교통비) 교통비는 아래 예외사항 외에는 모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미수선수리비”도 교통비 지급함
- (렌트비·교통비 지급예외사항) 다음 3가지 사유로 분류하고,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

NO	사유1	사유2
1	소유자 확인불가	소유자 연락두절
		관련서류 제출시 지급예정
2	청구포기	소액청구포기
		미지급 협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수령거절

NO	사유1	사유2
3	미지급대상	대상차종 아님
		개인택시 휴업손해로 지급
		정비업체 무상대차
		소멸시효 경과
		소송판결
		후처리건으로 선처리사에서 지급

※ 대인배상 없이 과실 상계 없는 조건으로 보상시에는 미지급사유를 사유1 청구포기, 사유2 소액청구포기로 함

나. 휴차료

영업용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영업손해액

- 휴차료 지급기준은 “붙임2” 휴차료 표준일람표의 요금을 한도로 함
- 미수선수리비건도 휴차료 지급
- 대형 이륜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 대차요금 한도
- 휴차료 미지급시에는 상기 “가”의 렌트비·교통비 지급예외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고서에 기재

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출고 후 2년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후 차량시세하락으로 입는 손해액

○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지급대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기계도 포함**하고 있음

○ 약관 변경 사항

-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액도 수리비용의 10%~20%로 상향조정

- 개정사항 적용시기 : '19년 5월1일(5.1일 포함) 이후 가입하고 사고요건을 만족한 경우 적용함

현 행	개 정(안)								
<p>[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p> <p>2. 대물배상 지급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지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td> <td>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u>2년 이하인</u>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p> <p><u>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u></p> </td> </tr> </tbody> </table>	항 목	지급 기준	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u>2년 이하인</u>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p> <p><u>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u></p>	<p>[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p> <p>2. 대물배상 지급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지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td> <td> <p>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u>5년 이하인</u>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u>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20%</p> <p>(2) <u>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15%</p> <p>(3) <u>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10%</p> </td> </tr> </tbody> </table>	항 목	지급 기준	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p>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u>5년 이하인</u>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u>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20%</p> <p>(2) <u>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15%</p> <p>(3) <u>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10%</p>
항 목	지급 기준								
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u>2년 이하인</u>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p> <p><u>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u></p>								
항 목	지급 기준								
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p>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u>5년 이하인</u>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u>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20%</p> <p>(2) <u>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15%</p> <p>(3) <u>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u> : 수리비용의 10%</p>								

○ (자동차) 피해물이 자동차인 경우 년식과 중고시세 필히 확인

【 중고시세 확인절차 】

- 現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중고시세*를 참고하여 해당차종 및 년식에 따른 중고시세를 확인

***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제공하는 시세 가이드북 연간 구독 권유 (월 48,000원)
- 상기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량이거나 옵션장착 등으로 분쟁이 예상되는건에 대해서는 개별 의뢰하여 시세를 확인한다.

<의뢰처>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www.seoul.org)
에서 회원가입 후 시세 의뢰

담당자	최은규 팀장 (02-847-3611)	
비용	1천만원 미만	국산차 : 33,000원
		외제차 : 55,000원
	1천만원 이상	110,000원

○ 종결보고서에 “피해차량 정보” 사항 중 아래 항목은 빠짐 없이 확인 후 기재 (시세 지급 대상일 경우만 해당)

차명		차량등록일	. . .
교환가액	원	배기량	

- (농기계) 농기계는 중고시세가 시장에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종별 내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에 의한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정함

[농기계 기종별 감가상각률]

농기계 기종	내용년수	년감가상각률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항공방제기)	10년	9%
농용트랙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8년	11.25%
동력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15%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5년	18%
지자체소유농기계(일괄)	8년	11.25%

- 지급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
- 농기계 년식 : 구입시기가 아닌 제조일자*로 확인
 - * 농기계에 부착된 명판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음 만일 없는 경우에는 기대번호 확인 후 제조사에 문의
- 농기계 제조달가액 : 각 제조사에 확인

- 자동차, 농기계 전손일 경우에는 시세하락 지지급

라. 자동차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세 인정기준

- 자동차 대물보상 시 전손처리 하였을 경우 피해물 가액의 상당하는 취득세 지급
 - 승용차 : 7%, 화물차 5%

② 자손·대인 지급기준의 명확화

가. 부상급수 적용

- 부상급수의 적용은 병·의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근거하여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또는 상해등급 적용기준에 따름
(이외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쟁점별 사안에 대하여 본사 담당자와 상의)
- 자손인 경우 진단서 발급 시 해당 부상급수 적용

나. 휴업손해 인정기준

- 입원피해자
 - 입원피해자에 대한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입원기간을 한도
(예) 초진 14일 기간 중 5일간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 5일 인정
- 통원피해자
 - 통원피해자에 대한 휴업일수의 인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한 치료기간의 범위 안에서 통원일수 3일에 대해 휴업손해 1일을 인정할 수 있음
(예) 초진 14일 기간 중 5일 통원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1일 인정 가능

【유의사항】

-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을 확인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 객관적으로 휴업손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다. 향후치료비 인정기준

- 장기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 보상처리 지연 시 손해액 확대가 예상되는 피해자 등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라. 기준(약관)합의와 특인합의

- 기준(약관)합의 :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합의한 건
- 특인합의 : 법원예상판결액으로 본사특인으로 합의한 건

- 부상상해등급 8급 이상, 사망·후유장해건만 특인합의에 해당
- 기준(약관)합의 지급기준과 특인합의 지급기준을 혼용하지 않음 (예) 위자료는 기준(약관)합의 기준이고, 휴업손해는 예상판결액으로 산출
- 특인 결정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0~90% 한도내에서 정하며, 부득이 초과심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함
- 특인절차로 진행할 경우에는 보고서상에 약관기준으로 산출된 금액과 특인으로 산출된 금액을 비교 하고, 특인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기재토록 함

③ 장기미결 관리 강화

- 파손 농기계 입회 원칙으로 하며, 전화로 서류 등을 요청하지 말고 계약자, 수리업체 찾아가서 견적서, 사진 등 징구
⇒ 농기계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지연입고, 부품조달, 수리지연 제외하고는 최대 3개월 이내 종결

- 고액 대인건 최초 조사 시 소득, 장해 철저 조사 요망
- 장기 대인건 소득, 장해율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 대처 요망
- 각 회사차원에서 장기미결건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 장기미결점검 시 미결사유 내용이 “계약자 서류 미징구, 수리업체 견적서 미징구“와 같은 사유는 없도록 함

③ 농기계 표준정비수가 및 차량가액 적용

- (농기계 표준정비수가) 농기계 손해사정 시 표준정비수가 기준내 적용하여 적정 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함
 - 아래표와 같이 항목별 분리하여 산정

부품	
공임	
견인·구난비	
계	
잔존물(S.C)	
자기부담금	
지급금액	

- (농기계 차량가액) 농기계 차량가액은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고시
 - 농기계종합보험은 기평가보험이므로 감가적용 하지 않음
 -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적용

(예) '19년 3월 가입 당시 차량 가액 1,000만원, 9월 사고 발생 시 하반기 차량기준가액이 900만원일 경우 900만원이 차량가액이 됨

3 향후 계획

- 보험금 누락발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 등은 조속히 시행
- 본 업무지침에 의해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및 손사법인 교육 실시

- 붙임 1. 대차료 표준일람표
2. 휴차료 표준일람표. 끝.

붙임1

대차료 표준 일람표

구분	배기량(예시)		대여시간별 요금			대여기간별 요금			
			6H	10H	12H	1~2일	3~4일	5~6일	7일상
경형	0 ~ 1000	마티즈, 모닝, 스파크, 레이	34,620	44,500	49,400	61,800	55,600	52,500	49,400
소형	1001 ~ 1400	뉴클릭, 베르나, 프라이드, 엑센트	36,100	46,400	51,500	64,400	58,000	54,700	51,500
소형	1401 ~ 1600	아반떼, K3, SM3, 쏘울	39,900	51,300	57,000	101,200	64,100	60,500	57,000
중형	1601 ~ 2000	소나타, K5, 말리부	61,900	79,600	88,400	110,500	89,500	93,900	88,400
대형	2001 ~ 2400	알페온 2.4, 그랜저 2.4 SM7 2.4	96,800	124,500	138,300	192,900	155,600	147,000	138,300
대형	2401 ~ 3000	알페온 3.0 그랜저 3.0 SM7 3.0	107,600	138,300	153,700	192,100	172,900	163,300	153,700

■ 승합차

11인승	코란도쿠리스	98,300	126,400	140,400	175,500	158,000	149,200	140,400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79,900	102,700	114,200	142,700	128,400	121,300	114,200

붙임2

휴차료 표준일람표

차종	구분	1일휴차료	차종	구분	금액	
택시	일반	44,420	고속버스	우등	232,820	
	모범	43,330		일반	162,970	
화물차	벤형	43,260	시외버스	직행	139,690	
	1톤이하	43,910		일반	128,040	
	2톤이하	53,790	시내버스 (군내버스)	일반(광역시이상)	108,520	
	3톤이하	63,735		일반(광역시이하)	86,820	
	4톤이하	73,680		좌석(광역시이상)	119,370	
	5톤이하	76,530		마을버스	75,960	
	8톤이하	85,060	전세버스	대형(26인승)	86,320	
	9톤이하	87,910		중형(16~25인승)	77,700	
	11톤이하	95,840		고속전세	129,490	
	12톤이하	100,620	대여 자동차	소형승용 (1600CC미만)	31,130	
	15톤이하	113,170		중형승용 (1600CC~2000)	36,200	
	15톤초과 (톤당 4,830원 가산적용)	주1		대형승용 (2000CC~2500)	42,440	
				고급형 (2500CC이상)	84,040	
	이륜차	경형(50CC미만)	15,200	소형버스 (12인승 이하)	소형버스 (12인승 이하)	47,300
소형(50CC이상 ~ 100CC이하)		15,960	대형버스 (12인승 초과)		대형버스 (12인승 초과)	52,200
중형(100CC초과 ~ 260CC이하)		29,350				
대형 (260CC초과)		주2	최대인정금액		110,600	

주)1. 113,170원 + (4,830원 × 톤)

2. 29,350원 + (70원 × CC)